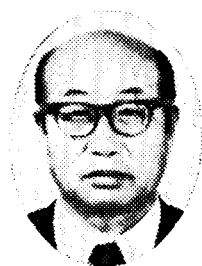


韓國火災保險協會의

設立과 展望



李 昌 圭

本協會理事

目 次

1. 火保協會의 設立意義
 - 가. 保險의 새로운 傾向
 - 나. 保險의 目的에 對한 安全點檢制度의 採擇
 - 다. 韓國에 있어서의 特徵

2. 點檢現況
 - 가. 對象物件
 - 나. 點檢의 現況과 애로
3. 業務의 내일
 - 가. 點檢業務
 - 나. 附帶業務
 - 다. 生産的인 業務開發

1. 韓國火災保險協會의 設立意義

가. 保險의 새로운 傾向

一段 發生한 災難의 事後收拾보다는 災難의 發生을 可能한 限 未然에 防止하는것이 보다 合目的이고 合理的이라는 見地에서 20世紀에 들어서 “豫防”이라는 命題가 크게 脚光을 받게되어 治療醫學보다는 豫防醫學, 鎮壓消防으로부

豫防消防, 補償하는 保險보다는 豫防하는 保險 등으로 그 機能이 擴大 變貌해 가고 있다.

豫防은 보다 적은 費用으로 事前措置를 取하므로써 보다 큰 支出을 防止할 수 있는 經濟行爲로서 적은 費用으로 큰 經濟所用에 對用하는 點에서는 保險의 性質과도 一脈 通하는 點도 있다. 그러나 保險은 大數를 前提條件으로 하는 것이고 豫防은 個別經濟自體의 힘으로 할 수 있는 保險以前의 方法으로서 本質的으로 相違하는 것이나 兩者는 相互補完하여 兩立해 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豫防措置를 잘 해서 事故가 줄어들면 當場은 아니더라도 終局에 가서는 保險加入者는 보다 合理的인 保險料로 保險에 加入할 수 있게 되고 保險者는 損害率의 輕減으로 보다 나은 收支의 改善을 結果하게 될 것이다. 保險은 바야흐로 補償하는 保險에서 豫防하는 保險으로 變貌하면서 高次元의인 發展을 摸索하여 가고있다. 停滯 없는 變化속에 事物의 참다운 모습이 介在하듯이 保險 特히 火災保險의 이와같은 機能의 變化야 말로 歷史的인 發展相으로 認識되고 助長되어야 할 것이다.

變化는 現狀維持를 打破하는 것으로 程度의 差는 있으나 반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발이 없다면 그것은 變化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 保險의 目的에 대한 安全點檢制度의 採擇

火災의 原因을 分析해 온 者 가운데 火災의 50%는 不注意로 因해서 發生하고 25%는 設備의 不完全에 基因하며 나머지 25%는 無教育 無知로 因한다 하였다. 이 數字는 勿論 概數를 表示한 것이나 不注意가 火災原因의 大宗을 占하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 證明하는 바이다 實際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大數를 占하고 或은 60% 또는 그 以上이 될지도 모를 程度다.

單只 火災統計中에는 반드시 原因不明이 있는데 그 中에는 自然發火나 微妙한 電氣作用도 있을 것이나 그 中에도 亦是 不注意가 大宗을

占할 것으로 推測된다.

火災原因中 不注意가 大數를 占한다는 事實은 곧 火災豫防의 第一策은 實로 注意喚起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每年 同一한 不注意를 되풀이하고 火災發生件數는 減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大型化해 감은 實로 한탄하여 마지하지 않을 수 없다.

防火設備의 不完全에 基因하는 것이 25%를 나타내고 있으며 無教育 無知에 대하여는 이를 教育하여야 되며, 라디오·新聞·T.V·「포스타」·雜誌·「판푸렛」·講演會 등의 「메스·메디어」를 통한 啓蒙이 必要的인 教育이 된다.

人命保護에 대하여는 避難施設을 設備할 것을 建築設計圖面上에 完全히 設計하여야 하고 建築施工業者는 法規의 有無에 不拘하고 自發的으로 最善의 方策을 다하여 人命保護에 萬遺漏 없기를 期하여야 한다.

俗談에 “소 잃고 오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換言하면 소 잃기 前에 오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말로 풀이 된다. 火災保險의 경우에 이것을 適用해 보면 火災가 發生하여 災難을 당하기 前에 火災發生의 危險性이 있는 施設에 대한 安全點檢을 받아서 火災의 原因이 될 만한 것을 미리 除去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推論의 結果로서 火災保險의 目的에 대한 危險調査를 始作하게 되었고 危險의 累積化 大型化에 따라 損害의 輕減手段으로 目的物의 事前調査가 保險業務의 하나로 擡頭하게 되었다. 保險會社가 하는 이와 같은 事前調査는 危險判斷 및 最大危險(MPL)測定을 爲主로 한 것이었으며 散漫的이었고 非組織的이었던 것을 特殊建物에 대한 義務保險制의 採擇을 契機로 이와 關聯시켜서 制度化한 것이 火災保險의 目的에 대한 安全點檢制度이다. 이를 위하여 1973年 2月 6日 法律 第2482號가 公布되었고 이에 따라 安全點檢專門機關으로서 國內 10個 損保社의 共同出捐에 依하여 運營되는 韓國火災保險協

會가 設立되었다.

다. 韓國에 있어서의 特徵

火災保險에서 火災豫防을 위한 防災業務를 相當할 部署를 生覺하게 된 것은 1940年代 以後의 일로 안다. 이것도 火災業務部에 所屬된 一個 課程度로서 처음에는 最大危險(Maximum Possible Liability)의 測定, 危險數 等 保有査定上의 必要에 따라 保險 目的物의 現場을 踏査한데서 부터 始作하였다. 또 保險料率의 合理化라는 社會的要求에 따라 料率適用의 正確을 期하는 한편 料率引下에 대한 填補(COVER)策으로 事故의 未然防止를 考慮하지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에서 保險의 目的에 대한 事前調査를 妥當하게 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上記와 같은 經緯로 對象物에 대한 調査가 始作되었기 때문에 各保險會社 마다 觀點이 區區하였고 統一된 基準이라는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保有査定에 關聯된 業務이었기 때문에 그 內容은 秘密로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1945年 解放과 더불어 韓國의 火災保險은 創建의 過程을 거쳐 今日에 이르는 동안 熾烈한 競爭속에 保險의 募集에 心血을 다하는 가운데 미처 履踐하지 못한 것 中의 하나가 이 點檢制度의 確立이었던 것이다.

保險契約의 募集과 危險의 質的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危險의 改良, 危險의 改良手段으로서의 安全點檢은 그 必要性을 認識하면서도 實行에 英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中 大然閣 호텔, 市民會館 等の 大火를 契期로 高層建物에 대한 火災의 豫防과 人命被害에 대한 補償策의 確立이라는 急迫한 社會的인 要請이 特別法의 制定까지를 促求하여 드디어 '73.2.6 法律 第2482號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을 公布하기에 이르렀다.

高層建物에 대한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의 加入을 義務化하는 同時에 損保會社에 대하여는 保險의 目的에 대한 安全點檢機關으로서 韓國火災保險協會를 設立하게 한 것으로 火災保

險 義務保險對象物에 대한 共同點檢機關이라는 點에서 韓國火災保險點檢機關으로서의 特徵이 있다. 先進國의 火保社에서 각각 恣意로 하는 點檢과 制度의 差異가 있음은 勿論 點檢業務內容에 있어서도 差異가 없을 수 없음을 認識하지 아니 할 수 없다.

自然發生的으로 保險會社에서 保險의 目的에 대한 點檢業務가 軌道에 올라 있었고 共同事務所라는 保險의 共同引受機關이 없었던들 樣相은 매우 달라 졌을 것이다. 好 不好 間에 共同點檢機關과 保險 共同引受機關이 兩立하게 되어 安全點檢과 保險契約을 各其 別個의 獨立된 機關에서 取扱한다는 不自然한 形態가 되었으나 이는 克服해야 할 韓國損保業界의 現實이며 如何한 形態로 던지 點檢機關이 생겼다는 事實은 舊設을 脫皮한 새로운 姿勢로서의 意義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自然發生的이 아니라 法에 의하여 他意로 設立이 強要되었다는 點에 一抹의 섭섭한 感情이 없을 수 없으나 이것은 發展의 速度를 加速化하기 위한 措置로 理解되어야 하겠다.

2. 點檢現況

가. 對象物件

義務保險의 對象으로서 本協會의 安全點檢對象이 되는 所謂 特殊建物이라 함은 서울, 釜山, 大邱에 所在하는 아래와 같은 建物로서 이들은 모두 74.6.30까지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義務的으로 加入하여야 한다. 또 本協會가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하는 建物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保險에 加入해야 할 特殊建物, 略하여 特殊建物, 이라 한다.

▲ 特殊建物

(1) 4層以上の 建物

層數 計算方法은 建築法施行令 第6條 第1項 第7號의 規定에 依하되 地下層은 이를 層으로 보지 아니한다.

(2) 國有建物

國有財産法 第3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한 不動

產中 延面積이 1,000m²(300坪) 以上の 建物.

(3) 學校建物

教育法 第81條에 規定한 學校建物(社團法人 學校災害復舊共濟會에 加入한 것은 除外).

(4) 私設講習所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第2條에 規定한 私設講習所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330m²(100坪) 以上の 것 (學館, 洋裁·美容講習所, 小體育館, 圖書室 等 包含).

(5) 病院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規定한 綜合病院 및 病院用建物.

(6) 호텔

宿泊業法 第2條 第2項에 規定한 호텔用 建物.

(7) 公演場

公演法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公演場用 建物.

(8) 映畫, TV 撮影所

(9) 放送施設場

(10) 屋內販賣場

販賣場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000m²(300坪) 以上인 建物(百貨店「수퍼마켓」·「아케이드」等 包含).

(11) 市場

市場法 第2條 第3號에 規定한 市場用 建物.

(12) 料理店·舞蹈場·「카바레」·「바」

地方稅法施行令 第103條에 規定한 이와 같은 目的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330m²(100坪) 以上の 建物.

(13) 共同住宅

家口數 10 以上の 것으로 延面積이 1,000m²(300坪) 以上の 建物(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指定하는 市民共同住宅은 除外).

等으로 4層以上の 高層建物과 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를 先 制限하여 規定한 것으로서 人命被害에 대한 保險的인 補償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規定한 것이라 하겠다.

나. 點檢의 現況과 隘路

本協會의 設立目的이 特殊建物에 대한 火災豫

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과 이에 關한 研究啓蒙을 통하여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을 豫防함에 있으므로 協會의 主業務는 特殊建物の 安全點檢이다. 우리의 安全點檢은 安全點檢規程과 安全點檢要領에 따라 防火施設의 現況과 그 作動狀態 및 그 施設이 關係法規에 規定된 標準에 具體的으로 合當與否를 判斷하는 것으로서

(1) 電氣施設關係, 汽罐·機械關係, 危險品關係, 入住狀態, 管理狀態, 消防規程訓練狀態 等を 點檢하는 Prevention protection(豫防對策),

(2) 消火設備(消火器, 消火栓 등)를 點檢하는 Extinguishment(消火設備),

(3) 警報, 速報 等 施設을 點檢하는 Alarm,

(4) 建物の 構造, 內裝, 貯藏品, 防火區劃 等を 點檢하는 Containment,

(5) 避難施設, 避難器具 安全誘導對策을 點檢하는 Evacuation 等으로 大別된다. 이는 各 英字單語의 頭文字를 따서 PEACE, Peace Cheek 라 한다.

우리의 點檢職員은 建築, 電氣, 化工, 機械 및 消防學을 履修한 工學士들로서 7月 2日 부터 特殊建物에 대한 點檢을 實施하여 相當量의 實績을 올리고 있으며 點檢職員들도 진지하게 使命感을 가지고 誠實하게 責任點檢을 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最初로 唯一無二한 無料民間點檢機關(10個 損保社에서 共同出招하여 運營하기 때문에 無料)으로 그 間의 結果를 보면 從前에 他機關에서 하던 點檢보다 細密하다는 것이 衆評이다. 그 間의 點檢結果 補修 補完할 곳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理由로 經濟的인 形而上 當場에는 點檢을 받을 수 없다는 建物所有者, 無條件 保險이라면 귀찮으니 點檢도 받지 않겠다는 保險忌避派主人, 學家不在하여 點檢을 避하는 不在派主人, 此日彼日 延期하는 延期派主人, 過剩細密點檢을 理由로 途中에 忌避하는 途中下車派主人, 까닭없는 트집으로 點檢員을 괴롭히는 트집派主人 等の 여러가지 拒否型이 있는가 하

면 「라디오」放送을 듣고 電話要請해오는 熱誠者도 있으며 好意的으로 받아주는 好意派도 있다.

그러나 點檢 事前通知書를 가지고 가서는 保險會社의 一線社員以上の 忍耐와 끈기를 가지고 겨우 說得하여 點檢을 받게 하는 경우가 許多하이 保險證券의 「세일즈」보다도 安全點檢의 說得이 現在로서는 더 困難하라는 것을 感知할 程度이다.

保險加入과 安全點檢을 回避하는 根本理由는 무엇보다도 韓國의 火災發生率이 他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적고 大火 亦是 他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적으며 氣象條件이 좋기 때문에 火災에 대한 切迫感이 稀少하여 火災에 대한 警戒心이 적는 所致라고 나는 推斷한다. 火災에 대한 警戒心を 더욱 高調시키고 이를 火災豫防에까지 誘導해 가기 위해서는 安全點檢을 자주 해서 不斷히 警戒心を 注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火災의 大部分은 施設의 不完備보다는 不注意에 基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隨時安全點檢의 度數를 늘여서 火災豫防에 대한 不斷한 警戒心과 關心을 注入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그 間의 點檢結果를 보면 火災發生에 대한 無關心과 無警戒傾向이 普編的이라 말할 수 있다.

施設面에서는 形式的이고 展示的일 뿐 有事時에 有効適切하게 使用할 수 있는 것은 적었으며 消防官署에서 命令하고 指示하고 督勵하여 마치 못해서 차려 놓았다는 印象을 주는 것이 많았다. 이를 보아 지금까지 消防官署의 勞苦가 상상외로 많았음을 充分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點檢에 대한 抵抗意識은 필경은 保險에 대한 抵抗意識에서 由來되는 것으로 推測된다. 點檢過程에서 豫期치 않았던 時間과 相當한 人員이 所用되고 있으나 開發途上國家의 落後된 한 現象으로 時間의 經過와 安全點檢에 대한 意識改造로 解決되기를 期待하여 마치 아니한다.

協會는 固有業務인 點檢業務와 建物所有主들

의 意識改造를 위한 弘報業務를 二大業務의 支柱로 하고 있다. 또 火災에 대한 啓蒙 教養은 點檢 못지않게 火災發生率의 輕減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點檢忌避傾向이 하루 빨리 拂拭되어 웃는 낯으로 點檢을 받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所望이고 協會가 當面한 애로의 하나인 것이다. 現在 協會에서 하는 點檢은 74年 6月 30日까지는 義務性이 없기 때문에 任意承諾形式으로 進行하고 있으며 現在로서는 拒否者에 대하여 取할 수 있는 方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되기 前에는 不良物件에 대한 隨時點檢도 任意合意가 아니면 할 수 없는 形便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協會는 不斷한 說得으로 所與된 業務量의 消化에 全力을 다 하고 있다.

우리는 純粹한 民間機關으로서 自己業務遂行에 強制性을 期待하는 것 自體가 非倫理的이라고는 生覺하나 義務保險과 結付되어있는 安全點檢이라는 點과 自然發生的이 아닌 法의 힘에 의하여 誕生된 韓國의 現實의 所産이기 때문에 우리의 眞意가 理解될 때 까지는 不可避한 難點으로 點檢業務의 애로가 될 것이다.

3. 業務의 內일

本協會의 業務는 法第15條에 明示된 바와 같이

- ①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
- ② 火災保險에 있어서의 消火設備에 따른 料率 割引等級의 査定.
- ③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關한 資料의 調査 研究 및 啓蒙.
- ④ 行政機關 其他 關係機關에의 火災豫防에 關한 建議.
- ⑤ 其他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業務 등으로 되어 있으나 主된 業務는 第1號의 安全點檢業務인 것이다.

가. 安全點檢

點檢員의 充員이 끝나고 裝備가 一應完備되면

그 間의 經驗과 熟練度를 勘案하여 Peace Cheek의 內容도 더욱 充實하게 하여 特殊物件의 火災豫防 및 消火設備에 關한 限 萬遺漏없도록 火災에 대한 注意喚起와 警戒心의 高調로부터 消火施設의 保守管理에까지 留意해서 指導啓蒙할 수 있도록 隨時點檢을 強化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隨時點檢을 할 수 있게 되려면은 于先 義務保險에 加入되어야 하고 點檢要員이 뜻대로 確保되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不良物件에 대하여는 隨時點檢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는 또 相互矛盾되는 點이 있어서 進退가 雜谷한 바이다. 卽 隨時點檢의 길을 트기 위해서 不良物件의 火災保險加入을 強勸하기가 困難하다는 點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火災의 50%는 不注意로 發生하느니 만치 隨時로 가서 火災에 대한 警戒心을 高調해 주면 結果적으로 火災發生率이 크게 輕減될 것이 明確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協會는 特殊建物에 대한 火災의 豫防이라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協會의 年間 點檢業務量은 大略 6,300件으로 豫想되며 法の 規定으로는 이들은 '74年 6月 30日까지에는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協會는 이에 대한 安全點檢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人員과 裝備를 具備하여 一時에 點檢業務量이 殺到하여 混亂을 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業務量의 月別平準化를 期할 수 있도록 事前點檢을 하고 있는 바이다.

所與된 特殊建物에 대한 點檢業務의 質의 面을 위하여 點檢職員의 技術向上과 火災原因의 科學的인 分析·研究 이와 같은 事業結果의 一般에의 啓蒙·P.R, 國際機構와의 紐帶, 情報·資料 交換 등으로 內實을 期하여 世界的으로도 獨特한 形態를 가지고 出發한 火保協會의 權威를 높여 가는 것은 곧 우리 火保業界의 質的向上을 圖謀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아 疑心하지 아니한다.

나. 附帶業務

協會는 火災豫防을 더욱 效果的으로 하기 위

하여 附帶業務로서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消火機器를 寄贈할 수 있으며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消火設備改良에 必要한 資金을 貸與할 수도 있다.

또 消火機器의 製造工場을 設立할 수도 있고 消火機器를 製造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金을 貸與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事業은 勿論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일이나 于先 豫算措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가까운 時日안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特別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深甚한 關心이 傾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韓國에 있는 消火機器製造業者의 零細性으로 보아 보다 優秀한 性能의 消火機器의 出現을 위해서는 이의 支援策이 진지하게 舉論되고 實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生産的인 業務開發

協會의 運營은 10個 損保社의 共同出捐金에 의존하고 있으나 協會의 設立目的에 符合되는 事業中에서 火保協會가 하므로서 보다 効率的으로 할 수 있는 事業의 하나가 있으니 곧 消火機器의 檢定業務가 이에 屬하는 것으로 본다. 消火機器製造業者가 製作한 消火機器의 性能檢査를 協會가 하게 되면 協會로서는 試驗所의 設置, 檢査員의 確保, 資金 등이 所要되나 消火機器의 檢定은 相當한 報酬를 받고 有料로 할 것이니 하나의 事業으로 收支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國家檢定과 民間檢定이 重複된다는 非難이 있을지 모르나 보다 優秀한 製品의 生産을 促求하기 위해서는 二元的인 檢定制度가 效果的인 質的 向上을 結果하게 될 것이다.

出捐金 100% 依存에서 漸次 脫皮하기 위하여 生産的인 獨自稼動으로 自立을 指向해 가는 것이 우리의 내일의 業務方向의 하나로 보며 가까운 問題로부터 始作하여 漸次 그 行動半徑을 擴大해 가면 意外의 成果를 거둘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할 수 있는 素地도 많이 있다고 본다.